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5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과장)

가. 제안이유

-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안정된 출산환경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범위(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안 제5조)
-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안 제6조)
-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11. 14.
- 회부일자 : 2024. 11. 25.
- 상정일자 : 2024. 12. 5.

2. 제안이유

-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안정된 출산환경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범위(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안 제5조)
-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안 제6조)
-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충족 기준을 명시함.

< 지원 대상 >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택 외 세대 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함
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안 제5조(지원 제외 대상)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함.

< 지원 제외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
2.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평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안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에서 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횟수, 지급 기간 등 지급 내용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에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내용, 지급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제정되었다고 사료됨.

※ 평창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불임1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신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원 평창군)

검토결과	협의 완료
검토의견	<p>○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¹⁾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협의 완료’</p> <p>-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필요하며, 신청 인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 권고함 (소득 수준,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한 선정 심사 배점표 활용 등)</p>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불임2 관계 법령

□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①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권)를 갖는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68
----------	-----

제출년월일 : 2024.11.14.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안정된 출산환경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의 범위(안 제4조)
- 나. 지원 제외 대상(안 제5조)
- 다.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안 제6조)
- 라.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
- 다. 합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9. 23. ~ 2024. 10.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339호, 도시과-11643(2024. 10. 14.)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4314(2024. 9. 12.)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예산과-4314(2024. 9. 12.)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9957(2024. 9. 20.)호]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6288(2024. 10. 21.)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6524(2024. 10. 24.)호]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택 외 세대 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함
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
2.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평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
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 · 관리) 읍 ·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각각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혼인기준	혼인 신고일	20년 월	일(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청가구 소득기준	부부 합산소득	금 원	가족사항 (자녀수)	()명
대출현황	소재지			소유자
				면적(m ²)
	금융기관명		대출잔액(원)	
대출기간		대출이율	()%	
지급계좌	이자납부액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 신청인 본인 명의		
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증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소득기준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8,0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함	
3	1주택 기준	본인, 배우자, 세대 구성원은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4	제외대상	본인 및 배우자는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5	대출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의 용도로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심사 및 대출현황 파악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혼인관계사항, 주택소유여부, 금융기관대출자료, 소득상황 등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집	수급자격 선정·지원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배우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집	수급자격 선정·지원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배우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배우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 대장

관계법령 발췌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1.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產給與)
6. 장례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연1회 지원

나. 추계결과

$$- 1차년도 20가구 \times 3,000,000원 = 60,000,000원$$

$$2차년도 40가구 \times 3,000,000원 = 120,000,000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주거자금 대출이자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4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군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
연락처	(033) 330 - 24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40,000
주거자금 대출이자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4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000	120,000	120,000	120,000	540,000
	지방세 (군비)	60,000	120,000	120,000	120,000	54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